기금관리위원회 규정

2013년 7월 14일 제정

제1조(명칭) 본 회는 대한비과학회 기금관리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회는 대한비과학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이며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본 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한비과학회 기금의 운영 및 관리
2. 대한비과학회 기금의 사용 용도 결정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현 회장을 포함하여 역대 회장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현 재무이사가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 최고 연장자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본 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위원장이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회의내용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(회계의 독립) 본 회의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한다.

제7조(기금의 조성) 본 회의 기금은 기금을 위한 찬조금과 일반회계의 잉여금으로 회장이 불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.

제8조(기금의 지출) 본 회의 사업목적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위원회의 결의로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9조(기금의 관리) 본 회의 기금은 위원회의 결의로서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비과학회 명의로 예치하고 증서는 총무이사가 보관한다.